

법 제 처

국무총리지시제 8 호 (720-3583)

1984. 5. 14

수신 수신처 참조

제 목 법령의 현실화와 발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지시

1. 정부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법령정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국정지표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과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법령정비사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법제도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현실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현상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원·부·처·청의 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4, 11-53 (-19, 47, 48, 50)

나. 1

法令整備 総合計劃에 關한 指針

1984. 5.

1. 目 標

— 國政指標의 法的 具現 —

- 現實與件에 副應하는 合理的인 法制度
- 民意에 바탕을 둔 알기 쉬운 法制度
- 體系化된 法制度

2. 整備基準

가. 現實에 맞지 아니한 法令

- ① 制定 또는 全文改正된 후 最近 5年間 重要部分의 實質的
인 修正・補完이 없는 것.
— 그동안의 運營實績, 現實與件의 變化, 關聯制度의 變更 등
을 면밀히 評價하여 現實與件 및 關聯制度와의 調和를
이를 수 있도록 整備한다.

(例示：道路整備促進法 등 사실상 放置되고 있는 法令)

- ② 豫定하고 있는 規律對象이 擴大 또는 縮小되는 등의 事由
로 規律對象을 제대로 規律할 수 없는 것.
— 새로운 狀況變化를 反映하여 現實에 맞도록 整備・補完
한다.

(例示：船員法,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法律 등)

- ③ 國際的인 連繫下에 共通的基準과 原則 등에 따라 處理되는

法制度 分野

- 다른 나라의 立法變遷 또는 國際法規 등의 變遷에 맞추어 國際化時代에 對處할 수 있도록 整備한다.
(例示：海洋污染，著作權，特許，郵便關係法）

나. 애매모호한 規定

- ① 規定의 解釋에 관하여 紛爭이 자주 發生하는 對民關係法令 規定

- 그동안의 法執行事例(訴願·訴訟 事例包含)를 參酌하여 紛爭發生을立法的으로豫防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規定한다.

(例示：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의 規定中 “重大한 交通事故 또는 頻煩한 交通事故로 많은 死傷者를 發生하게 한 때” 등)

- ② 行政處分의 基準이 없거나 있어도 애매모호하거나 不合理하여 法律의 爭訟이 자주 일어나는 것.

- 行政處分의 基準을 部令 또는 訓令으로 마련하고 處分基準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다 명료하게 合理적인 基準을 마련한다.

* 「애매모호한 認許可 規定의 整備」는 國務總理指示 第5號 ('84. 4. 6) “認許可制度의 全面的 再檢討에 관한 指示”에 依據 整備한다.

다. 알기 어렵거나 國法 全體體系와 調和되지 아니한 法令

① 國民의 日常生活과 密接하게 關聯된 法令中 一般國民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 알기 쉬운 文章과 用語로 全面적으로 풀어쓴다.

(例示：道路交通法， 각종稅法等)

② 基本法制度를 有名無實하게 하거나 法生活의 混亂을 줄 虧慮가 있는 臨時措置法, 臨時特例法 其他 特例規定

— 基本法令에 吸收可能한 것은 吸收, 吸收不可能한 것은 서로 統合하거나 基本法制度와 調和되도록 한다.

(例示：刑法과 各種 刑事特別法等)

③ 同一한 民願事項 기타 關聯事項이 數個의 法令으로 分散되어 있는 것.

— 하나의 法令으로 統合可能한 것은 統合한다.

(例示：援護關係法令，公衆衛生關係法令，建築法・都市計劃法등에 分散되어 있는 建築關係規定등)

④ 기타 法令相互間 矛盾・抵觸되는 規定 또는 어느 法令에서 引用하고 있는 關聯 法令條文이 改正되어 맞지 아니하게 된 規定

라. 一貫性있는 國家施策遂行에 支障을 주는 法令

① 基本이 되는 法律의 主要內容이 變更되었거나 이를 제대로 受容하지 못하고 있는 關聯法令

— 그 내용을 受容하여 基本的 法律의 趣旨가 達成될 수

있도록 整備한다.

(例示：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制定에 따른 各政府投資機關設置法의 整備，國土利用管理法의 理念을 具體化하기 위한 土地利用 또는 規制關係法律의 整備，地方稅法上 加算金制度，地方財政法上 公有地의 無斷占用者에 대한 辨償金徵收，地方公企業法등)

②特定規定의 施行을 위한 事項을 다른 法律에서 정하도록 委任하였으나 이를 具體化한 法律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 迅速히 制定・整備한다.

(例示：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 47 條 第 1 項・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適用除外에 관한法律制定 기타 關聯 法令整備，國土利用管理法 第 3 條의 2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의 制定・整備등)

③法律의 規定이 基本方向만을 提示・宣言함에 그치고 있어 이에 附隨되는 立法이 따라야 함에도 附隨立法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法律을 具體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法令을 整備한다.

(例示：消費者保護法에 따른 關聯法令 制定・整備등)

④憲法施行과 關聯된 法律

一迅速히 制定 또는 改正 整備한다.

(例示：農地賃貸借制度，監查院法，訴願法等)

마. 未備된 法制度分野의 發展

①社會現象을 規律할 必要性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規律할 法制度가 없거나 未備된 分野

一 社會現象을 健全한 方向으로 誘導하기 위하여 關係法令을 마련한다.

(例示：割賦販賣，訪問販賣，強力犯等 犯罪被害者補償등)

②經濟的 價值가 있는 資源 등의 開發·活用을 위한 法制度가 未備된 分野

(例示：土石採取權等 認定，소프트웨어 開發者權益保護)

③權利救濟制度로서 未洽한 民事上의 義務確保規定

一 法令의 흥결을 틈타 債務 기타 지켜야 할 義務를 故意로 免脫하는 者 등에 대하여 債權의 補填 기타 義務確保手段을 強化한다.

(例示：民法，民事訴訟法，破產法等)

④國民에 대한 不利益處分時 事前에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聽取하는 聽聞制度가 未備된 認許可등의 法令

一 選別的으로 導入하도록 한다.

⑤效率的 團束手段이 未備된 有害無許可營業法令

一 直接強制手段等 效率的 規制團束方案을 選別的으로 導入 한다.

⑥不適合하게 된 罰則, 均衡이 맞지 아니한 罰則
— 다른 義務確保手段으로 轉換하거나 均衡이 맞게 調整·整備 한다.

⑦輕微한 行政法規違反事犯에 대하여 刑罰인 罰金을 課하게 되어 있는 경우.
— 過怠料轉換基準에 따라 罰金을 過怠料로 轉換하도록 한다.

바.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와 關聯된 法令
① '81 ~ '83年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와 關聯된 法令
중 未整備 法令
② '84年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와 關聯된 法令
③ '85年 이후 確定될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課題에 關聯된 法令
*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作業 對象選定基準〔別添1〕參照

3. 整備對象法令의 範圍

-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 條例, 規則 —
- o 制定 또는 全面改正된 후 最近5年間 改正된 바 없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 條例, 規則을 原則으로 하고, 部分改正된 바 있더라도 當該法令의 基本的 制度에 관한 改正이 없는 것을 包含한다.

* 參考: 整備檢討對象法律例示〔別添2〕

4. 推進體系

- 法制處는 法令整備事業推進을 總括한다.
- 各院・部・處・廳은 所管法令에 대한 法令整備事業을 推進한다.
- 各院・部・處・廳은 次官(次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法令整備推進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다만, 既存의 適正한 審議機構가 있는 경우에는 可能한 한 當該 機構를 活用하도록 한다.
法令整備推進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5人以上 15人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同委員會는 案件別로 主務 室・局長, 關係部處의 室・局長, 專門家 및 關聯民間團體 代表가 包含되어야 하며 公務員의 數와 기타 委員의 數를 같게 構成함을 原則으로 한다.
- 内務部長官은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이 計劃에 準한 自治法規整備推進計劃을 作成, 各地方自治團體(서울特別市 除外)의 長에게 送付하고 各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금 그 所管 條例・規則에 대한 整備作業을 推進・完了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 서울特別市는 自體的으로 自治法規整備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한다.

5. 推進方法

- 法令整備事業은 繼續事業으로 推進하되, 每年 3月末('84年の

경우는 6.10.)까지 當該年度에 着手할 計劃을, 每年 6月末 ('84年の 경우는 8月末)까지 當該年度의 法令整備推進狀況 中間報告를, 每年 12月 10日까지 當該年度의 法令整備推進狀況 年末報告를 作成, 法制處에 提出한다.

- o 當該年度 法令整備計劃을 修正한 때에는 上半期·下半期別로 中間報告 및 年末報告時에 修正內容을 함께 提出하도록 한다.
- o 法令整備推進計劃에는 案件別로 法令整備推進委員會構成의 概要 에 관한 事項도 包含시킨다.
- o 法令整備에 着手한 案件은 當該年度에 整備案을 作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事案이 複雜하여 當該年度에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繼續事業으로 推進한다.
- o 各院·部·處·廳은 每年 적어도 2個이상의 法令에 대하여 整備案을 作成함을 原則으로 한다.
- o 法令整備는 當該法令의 主務部處 主管으로 推進하되, 여り機關에 關聯되는 것은 基本法所管部處 主管下에 關聯部處와 共同으로 推進한다.
- o 法制處는 모든 法令에 關聯된 一般的·共通的인 法制度로서 改善되어야 할 事項 및 새로운 立法의 導入이 必要한 分野에 대하여 能動적으로 法令整備案등을 마련하여 主務部處의 整備를 支援한다.
- o 法令整備事業과 關係없이 그때그때의 國家施策을 遂行하기 위하여 法令을 改正하는 경우에도 當該 改正事項外에 法令整備

基準에 따라 모든 規定을 評價하여 法令整備事項을 함께 改正・推進하도록 한다.

6. '84 推進日程

區 分	日 程	主 管
1. 法令整備推進方案 各部處示達 (國務總理 指示)	'84. 5.10	法 制 處
2. 法令整備推進計劃作成, 法制處에 提出	'84. 6.10	各 部 處
3. 法令整備推進狀況中間報告 法制處에 提出	'84. 8.31	各 部 處
4. 法令整備推進狀況 年末報告 法制處에 提出	'84.12.10	各 部 處
5. 整備案 作成時 整備要綱 法制處에 提出	隨 時	各 部 處

[別添1]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作業對象選定基準

1. 政府組織內部의 非能率的, 浪費的 法令・制度

- 不必要한 組織・機能의 重複, 不合理한 機能配分・政策決定의 多段化
- 非合理的인 人事・豫算 및 事務管理制度

2. 大多數 國民에게 不便을 주는 法令・制度

- 複雜한 具備書類, 까다로운 書式
- 煩雜한 處理節次, 處理期間의 長期化
- 多元化된 處理窗口, 多岐化된 適用法令
- 遵守하기 어려운 過度한 規制

3. 國民의 自律性을 沮害하는 支援・規制 制度

- 不當한 自由競爭 制限
- 지나친 行政干渉
- 民間의 創意力を 制限하는 劃一的인 規制
- 企業의 體質을 弱化시키는 支援制度

4. 下向的・一方의인 政策決定 方式

- 聽聞, 意見陳述等 利害關係人의 參與機會 未洽
- 上意下達式 行政行態
- 國民에게 周知할 時間을 주지 않는 行政節次

5. 行政環境變化에 不適合한 法令・制度

- 時限의 經過・目的達成等으로 失效된 制度
- 現實과 符合되지 아니하는 制度
- 前近代的 法令・制度・行態

6. 國民의 道德觀念, 價值觀을 해치는 制度나 慣習

- 무분별한 外來奢侈・頹廢風潮
- 傳統的 美風을 輕視하는 制度나 行態
- 特惠나 脫法의 素地
- 人間의 尊嚴性을 해치는 要因
- 不公正한 去來秩序 등

7. 社會正義의 實現을 沮害하는 法令・制度

- 擔當公務員의 裁量行爲의 餘地가 많은 法令
- 請託素地가 있는 制度
- 職業安定・社會保護制度 未洽部門
- 勞使協調 및 健全한 企業家 精神을 沮害하는 要因

[別添2]

整備検討対象法律(例示)

法律名稱	制定 또는 全文改正日字	備考
<u>1. 行政一般・司法編</u>		
○ 行政代執行法	54. 3. 18	
○ 司法書士法	63. 4. 25	大法院規則과 大統領令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委任規定의 妥當性 與否 등
○ 國籍法	48. 12. 20	
○ 更生保護法	61. 9. 30	
○ 少年法	58. 7. 24	未成年者保護法과의 關係檢討 등
○ 民法	58. 2. 22	
○ 涉外私法	62. 1. 15	
○ 身元保證法	57. 10. 5	
○ 信託法	61. 12. 30	
○ 外國人土地法	61. 9. 18	
○ 重機抵當法	66. 12. 23	
○ 民事訴訟法	60. 4. 4	
○ 行政訴訟法	51. 8. 24	
○ 民事訴訟印紙法	54. 9. 9	
○ 戶籍法	60. 1. 1	

○ 地籍法	75.12.31	不動產登記法과의 關係檢討 등
○ 刑事關係法 刑法斗 特定犯罪加重 處罰等에 관한法律·罰金 等臨時措置法等 刑事特 例法, 刑事訴訟法		
○ 國內財產逃避防止法	50. 4.21	
<u>2. 地方行政·治安編</u>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67. 2.28	
○ 住民登錄法	62. 5.10	
○ 地方公企業法	69. 1.19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의 關係檢討 등
○ 地方財政法	63.11.11	公有地의 無斷占用者에 대한 辨償金徵收의 國有財產法과의 關係檢討 등
○ 地方稅法	61.12. 8	加算金制度의 國稅徵收法과의 關係 및 알기 쉬운 法令으 로의 再編成등 檢討
○ 未成年者保護法	61.12.13	少年法등과의 關係檢討 등
○ 信用調查業法	77.12.31	
○ 道路交通法	61.12.31	알기 쉬운 法令으로의 再編成 檢討 등

3. 財政·經濟編

○ 韓國造弊公社法等 各種 政府投資機關設置關係法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따 른 整備 (經濟企劃院主管, 關聯部處協 調)
○ 監查院法	63.12.13	
○ 豫算會計法 (關聯)豫算會計에 관 한特例法	61.12.19	
○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關聯法令		物價安定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등 다른法令에 規定된 公正 去來關係 規定의 統合 必要性 및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47條第7項의 規定 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適用 除外根據法律 制定 檢討 등
○ 政府保管金에 관한法律	61.12.13	
○ 消費者保護法 및 工 產品品質管理法等 消費者 保護 關聯法令	80. 1. 4	各個別法의 消費者保護關 係 規定의 消費者保護法 정 신에 비추어 妥當한지 여 부 檢討 (商品의 安全確保 ·品質表示·標準化·去來條 件·被害救濟 등)

		消費者의 實質的 保護를 為 한 立法分野 發掘 및 具 體的立法
		(例, 割賦販賣法 · 訪門販賣 法 · 製造物責任法 等)
○ 物品管理法	62. 1.20	
○ 各種稅法		不合理한 規定의 有無 및 알기 쉬운 法令으로의 再編成 檢討
○ 租稅犯處罰法	51. 5. 7	
○ 租稅犯處罰節次法	"	
○ 專賣犯處罰節次法	76.12.31	
○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 에 관한 特別措置法	66. 8. 3	第 5 條의 2 (擔保의 共託)의 擔保의 必要性 및 擔保額의 適正性與否 檢討와 第 7 條의 3 (會社整理節次에 대한 特 例)의 規定의 妥當性檢討 등
○ 信託業法	61.12.31	
○ 擔保附社債信託法	62. 1.20	
○ 保險業法	77.12.31	
○ 輸出保險法	68.12.31	
○ 各種 經濟關係育成法 · 振興法 · 促進法 (資		產業間 均衡 있는 發展誘導에 未治한 制度의 補完, 經濟發

本市場育成에 관한法律· 機械工業振興法·企業公 開促進法 등)	展與件에 맞지 않거나 障碍 要因이 되는 規定의 整備 등 檢討
<u>4. 國防・援護編</u>	
○ 防禦海面法	63. 3. 23
○ 軍用電氣通信法	61. 12. 30
○ 軍事援護關係法	
<u>5. 教育・文化編</u>	
○ 教育法	49. 12. 31
○ 私立學校法	63. 6. 26
○ 映畫法	66. 8. 3
○ 著作權法	57. 1. 28
○ 有線放送受信管理法	61. 8. 24
○ 社會團體登錄에 관한法律	63. 12. 12
<u>6. 農・水產編</u>	
○ 農產物價格維持法	61. 6. 27
○ 農水產物流通價格安 定에 관한法律	76. 12. 31
○ 種苗管理法	73. 2. 26
○ 主要農作物種子法	75. 4. 4
○ 植物防疫法	61. 12. 30
○ 農產物檢查法	62. 12. 24
○ 農業災害對策法	67. 1. 16

○ 防潮堤管理法	63.12. 5
○ 農地擴大開發促進法	75. 4.11
○ 農業倉庫業法	61.12.30
○ 水產業法	53. 9. 9
○ 漁業資源保護法	56.12.14
○ 沙防事業法	62. 1.15
<u>7. 商工編</u>	
○ 不正競爭防止法	61.12.30
○ 貿易去來法	67. 1.16
○ 輸出組合法	61. 9. 9
○ 輸出檢查法	62.10. 4
○ 發明保護法	58. 3.11
○ 計量法	61. 5.10
<u>8. 建設編</u>	
○ 各種土地關係法	土地收用根據規定을 둔 法 律中 土地收用法上의 公共 事業과 重複되어 不必要한 土地收用根據規定의 刪除 整 備 및 土地收用法上의 公 共事業範圍外의 事業을 위 한 土地收用根據規定의 土 地收用法에의 吸收統合 檢 討

		合理的인 理由 없이 土地收 用節次上 要求되는 事業認 定을 摘制하는 등 特別節 次規定의 調查整理 檢討 補償額의 算定基準인 基準 地價制度의 統一方案 檢討 土地評價를 위한 資格制度 의 一元化問題 檢討
◦ 建設業法	71. 1.19	
◦ 建築法	62. 1.20	
◦ 水道法	61. 12.31	
◦ 道路整備促進法	67. 2.28	
◦ 河川法	71. 1.19	
◦ 公有水面管理法	61. 12.18	公有水面管理法에서는 地方港 灣의 管理者가 海運港灣廳長 으로 되어있고, 港灣法에서는 地方港灣의 管理廳이 市・道 知事로 되어 있어 兩法間의 內容이 相衝되고 있는 問題 가 있으므로 關聯部處와 協 調하여 公有水面管理體系의 再整備 與否 檢討
◦ 公有水面埋立法	62. 1.20	

<u>9. 保健・社會・勞動編</u>		
○ 食品衛生法	62. 1. 20	여러개의 個別法으로 分散規
○ 公衆衛生關係法		定되어 있는 公衆衛生關係法
• 公衆沐浴場業法		
• 宿泊業法		의 統合整備
• 理容師 및 美容師法		
○ 環境保全法	77. 12. 31	
○ 醫療法	73. 2. 16	
○ 藥師法	63. 12. 13	
○ 災害救護法	62. 3. 20	
○ 產業安全保健法	81. 12. 31	事業場現實與件에 맞지 아니 한 規定의 有無 등 檢討
<u>10. 交通・遞信編</u>		
○ 鐵道法	61. 9. 18	
○ 自動車運輸事業法	61. 12. 30	
○ 道路運送車輛法	62. 1. 10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63. 4. 4	
○ 航空法	61. 3. 7	
○ 船員法	62. 1. 10	
○ 郵便物運送法	60. 2. 1	
<u>11. 기타</u>		
○ 各種 營業等 認許可 法規		

- 不利益處分時 事前意見聽取制度導入擴大方案 檢討
- 有害無許可營業의 根絕方案 檢討
- 課徵金導入擴大方案 檢討
- 輕微한 行政法規違反에 대하여 罰金을 規定한 各種 法律
- 土石採取規制와 關聯된 各種法律
 - 土石採取規制와 保護에 관한 單一法 制定檢討
- (關聯)
 - 山林法
 - 沙防工事法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法律
 - 農地擴大開發促進法
 - 草地法
 - 酪農振興法

- 都市計劃法
- 自然公園法
- 宅地開發促進法
- 公有水面管理法
- 河川法
-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
에 관한特別措置法
- 道路法
- 產業基地開發促進法等。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국무총리지시 제 8 호	(전화번호 720-3583)	선결부상	조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법제처장	국무총리	
시행일자	1984. 5. 14	1984. 5. 14		
보존연한				
보 조 기 관	차장 실장		협	
기안책임자	김재홍			

경 유 수 신 참 조	수신처참조	1984. 5. 14 법제처	통 제 계 판
제 목	법령의 현실화와 발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지시		

1. 정부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법령정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법령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국정지표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과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읍니다.

2. 그러나 법령정비사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법제도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현실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현상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원·부·처·청의 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령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지침. 끝.

1205-25(2-1)A(갑)
1984. 12. 18승인

정책 질서 창조

190mm × 268mm (한지용지 2급 50g/m²)
총 단면 (1,500,000ea) 인쇄

나. 1

법령정비 종합계획에 관한 지침

=====

1. 목 표

- 국정지표의 법적 구현 -

- 현실여건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법제도
- 민의에 바탕을 둔 알기 쉬운 법제도
- 체계화된 법제도

2. 정비 기준

가. 현실에 맞지 아니한 법령

① 제정 또는 전문 개정된 후 최근 5년간 중요부분의 실질적인 수정·보완이 없는 것.

- 그동안의 운영실적, 현실여건의 변화, 관련제도의 변경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현실여건 및 관련제도 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한다.

(예시 : 도로정비촉진법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법령)

② 예정하고 있는 규율 대상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등으로 규율 대상을 제대로 규율 할 수 없는 것.

- 새로운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보완 한다.

(예시 : 선운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등)

③ 국제적인 연계하에 공통적기준과 원칙등에 따라 처리되는 법제도 분야

- 다른 나라의 입법변천 또는 국제법규등의 변천에 맞추어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예시 : 해양오염, 저작권, 특허, 우편관세법)

나. 애매모호한 규정

①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대민관련법령

규정

- 그동안의 법집행사례(소원·소송 사례포함)를 참작하여 분쟁발생을 입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규정한다.

(예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중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때" 등)

②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거나 있어도 애매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법률적 간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

-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 또는 훈령으로 마련하고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다 명료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 「애매모호한 인허가 규정의 정비」는 국무총리지시 제5호('84. 4. 6) "인허가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에 관한 지시"에 의거 정비한다.

다. 알기 어렵거나 국민 전체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한 법령

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중 일반국민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 알기 쉬운 문장과 용어로 전면적으로 풀어쓴다.

(예시 : 도로교통법, 각종 세법등)

② 기본 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법생활의 혼란을 줄 우
려가 있는 임시조치법, 임시특례법 기타 특례규정

- 기본 법령에 흡수 가능한 것은 흡수, 흡수불 가능한 것은
서로 통합하거나 기본 법제도와 조화되도록 한다.

(예시 : 형법과 각종 형사특별법등)

③ 동일한 민원사항 기타 관련사항이 수개의 법령으로 분산되
어 있는 것.

-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 가능한 것은 통합한다.

(예시 : 원호관계법령, 공중위생관계법령, 건축법.도시
계획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건축관계규정등)

④ 기타 법령상호간 모순·저촉되는 규정 또는 어느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문이 개정되어 맞지 아니하게된
규정

라.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주는 법령

① 기본이 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법령

- 그 내용을 수용하여 기본적 법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예시 :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 법의 제정에 따른 각정부 투자 기관 설치법의 정비, 국토 이용 관리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 이용 또는 규제 관계 법률의 정비, 지방세법상 가산금 제도, 지방재정법상 공유지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지방공기업법 등)

- ② 특별규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 신속히 제정·정비한다.

(예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적용 제외에 관한 법률 제정 기타 관련 법령 정비, 국토 이용 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 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정비 등)

- ③ 법률의 규정이 기본 방향만을 제시·선언함에 그치고 있어 이에 부수되는 입법이 따라야 함에도 부수 입법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정비한다.

(예시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관련법령 제정·정비 등)

④ 헌법시행과 관련된 법률

- 신속히 제정 또는 개정 정비한다.

(예시 : 농지임대차제도, 감사원법, 소원법등)

마. 미비된 법제도분야의 발전

① 사회현상을 규율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법제도가 없거나 미비된 분야

- 사회현상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마련한다.

(예시 : 할부 판매, 방문 판매, 강력법등 법적 피해자 보상등)

②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등의 개발·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된 분야

(예시 : 토석채취권등 인정, 소프트웨어 개발자 권리보호)

③ 권리구제제도로서 미흡한 민사상의 의무 확보 규정

- 법령의 흠결을 품타 채무 기타 지켜야 할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는 자 등에 대하여 채권의 보전 기타 의무 확보 수단

을 강화한다.

(예시 :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등)

- ④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 시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제도가 미비된 인허가등의 법령
- 선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 ⑤ 효율적 단속수단이 미비된 유해무익 가영업법령
- 직접강제수단등 효율적 규제단속방안을 선별적으로 도입 한다.
- ⑥ 부적합하게 된 법칙, 균형이 맞지 아니한 법칙
- 다른 의무 확보 수단으로 전환하거나 균형이 맞게 조정·정비한다.
- ⑦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 형벌인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는 경우
- = 과태료 전환기준에 따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한다.

바.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된 법령

- ① '81 - '83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와 관련된 법령중 미정비 법령
- ② '84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와 관련된 법령
- ③ '85년 이후 확정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에 관련된 법령

*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작업 대상선정 기준 [별첨1] 참조

3. 정비 대상 법령의 범위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 규칙 -
- 제정 또는 전면 개정된 후 최근 5년간 개정된 바 없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 규칙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개정된 바 있더라도 당해 법령의 기본적 제도에 관한 개정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 참고 : 정비 검토 대상 법률 예시 [별첨 2]

4. 추진 체계

- 법제처는 법령정비사업 추진을 총괄한다.
- 각 원·부·처·청은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각 원·부·처·청은 차관(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기존의 적정한 심의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 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법령정비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위원회는 안건별로 주무 실·국장, 관계부처의 실·국장, 전문가 및 관련민간단체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수와 기타 위원의 수를 같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내무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 계획에 준한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작성, 각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의 장에게 송부하고 각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 조례·규칙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서울특별시는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5. 추진방법

- 법령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되, 매년 3월말 ('84년의 경우는 6.10)까지 당해연도에 착수할 계획을, 매년 6월말 ('84년의 경우는 8월말)까지 당해연도의 법령정비추진상황 중간보고를, 매년 12월 10일까지 당해연도의 법령정비추진상황연말보고를 작성, 법제처에 제출한다.
- 당해연도 법령정비 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상반기·하반기별로 중간보고 및 연말보고시에 수정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법령정비추진 계획에는 안건별로 법령정비추진위원회구성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킨다.
- 법령정비에 착수한 안건은 당해연도에 정비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

- 각 원·부·처, 청은 매년 적어도 2개이상의 법령에 대하여 정비안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정비는 당해법령의 주무부처 주관으로 추진하되, 여러 기관에 관련되는 것은 기본법소관부처 주관하에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 법제처는 모든 법령에 관련된 일반적·공통적인 법제도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새로운 입법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법령정비안등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의 정비를 지원한다.
- 법령정비사업과 관계없이 그 때그 때의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개정사항외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모든 규정을 평가하여 법령정비사항을 함께 개정·추진하도록 한다.

6. '84 추 진 일정

구 분	일 정	주 관
1. 법령정비추진방안 각부 청시달 (국무총리 지시)	'84. 5. 10	법 제처
2. 법령정비추진 개획작성, 법제 처에 제출	'84. 6. 10	각 부 처
3. 법령정비추진상황증 간보고 법 제처에 제출	'84. 8. 31	각 부 처
4. 법령정비추진상황 연말보고 법제처에 제출	'84. 12. 10	각 부 처
5. 정비안 작성시 정비요강 법제 처에 제출	수 시	각 부 처

[별첨 1]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 대상 선정 기준
=====

1. 정부 조직 내부의 비능률적, 낭비적 법령•제도
 - 불필요한 조직•기능의 중복, 불합리한 기능 배분•정책 결정의 단단화
 - 비합리적인 인사•여산 및 사무 관리제도
2.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제도
 - 복잡한 구비서류, 까다로운 서식
 - 번잡한 처리절차, 처리기간의 장기화
 - 다원화된 처리창구, 다기화된 적용법령
 -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
3. 국민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원•규제 제도
 - 부당한 자유 경쟁 제한
 - 지나친 행정간섭
 - 민간의 창의력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규제
 -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지원제도

4. 하향적·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

- 청문, 의견진술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기회 미흡
- 상의 하달식 행정 행태
- 국민에게 주지할 시간을 주지 않는 행정절차

5. 행정환경 변화에 부적합한 법령·제도

- 시한의 경과·목적 달성 등으로 실효된 제도
-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 전근대적 법령·제도·행태

6. 국민의 도덕관념, 가치관을 해치는 제도나 관습

- 무분별한 외래사치·퇴폐풍조
- 전통적 미풍을 경시하는 제도나 행태
- 특혜나 탈법의 소지
-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요인
- 불공정한 거래질서 등

7.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여지가 많은 법령
- 청탁소지가 있는 제도
- 직업안정·사회보호 제도 미흡부문
- 노사협조 및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요인

(법률총2)

정부검토대상법률(예시)

=====

법률명칭	제정 또는 전문개정이자	비고
1. 행정이반·사법부		
○ 행정대집행법	54. 3. 18	
○ 사법서사법	53. 4. 25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임구정의 탄당성 여부 등
○ 국적법	48. 12. 20	
○ 객생보호법	61. 9. 30	
○ 소년법	58. 7. 24	미성년자보호법과의 관계 검토 등
○ 민법	58. 2. 22	
○ 선외사법	62. 1. 15	
○ 신원보증법	57. 10. 5	
○ 신탁법	61. 12. 30	
○ 외국인투자법	61. 9. 18	
○ 중기저당법	66. 12. 23	
○ 민사소송법	60. 4. 4	
○ 행소송법	51. 8. 24	
○ 민사소송인지법	54. 9. 9	
○ 호적법	60. 1. 1	
○ 자적법	75. 12. 31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 검토 등

○ 형사관제법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 에관한 법률· 범금 등 임시조치 법등 형사특례법, 형사소송법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50. 4.21	
<u>2. 지방행정·지방법</u>		
○ 농어촌지봉개량촉진법	67. 2.28	
○ 주민등록법	62. 5.10	
○ 지방공기업법	69. 1.19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과의 관계 검토 등
○ 지방재정법	63. 11.11	공유지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법상 징수와 국유재산법과의 관계 검 토 등
○ 지방세법	61. 12. 8	가산금제도의 세징수법과의 관 계 및 알기쉬운 법령으로의 재편 성 등 검토
○ 미성년자보호법	61. 12. 13	소년법등과의 관계검토 등
○ 신용조사업법	77. 12. 31	
○ 도로교통법	61. 12. 31	알기쉬운 법령으로의 재편성 검토 등
<u>3. 재정·경제법</u>		
○ 한국조폐공사법등 각종 정부 투자기관설치관제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비 (경제기획원·관, 관련부처협조)

○ 감사원법	63.12.13	
○ 예산회 계법 (관련) 예산회 기록에 관한 법률 법	61.12.19	
○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 법을 관련 법령		법을 관련 법령에 관한 법을 통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공정거래관 정구정의 통합 필요성 및 독점 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제 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 정거래행위 적용 제외근 거법률 제 정 검토 등
○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 법	61.12.13	
○ 소비자보호법 및 공산품품 질관리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80. 1. 4	○ 각 개별법의 소비자보호 관계 규정이 소비자보호법 정신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검토 (상품의 안전확보·품질표시· 표준화·기록조언·포함구제 등) ○ 소비자의 실질적보호를 위한 일반분야 발굴 및 그 적극적 법 (이), 할부판매법·발문판매법· 제조물 책임법 등)
○ 물품 관리법	62. 1. 20	통합화한 규정의 유무 및 암기 쉬운 법령으로의 전편성 검토
○ 각종 세법		

○ 조세법처법	51. 5. 7	
○ 조세법처법설치법	"	
○ 전매법처법설치법	76. 12. 31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56. 8. 3	제 5조의 2(담보의 공탁)의 담보 의 필요성 및 담보액의 적정성에 부과토와 제 7조의 3(회사정리절차 에 대한 특례)의 규정의 타당성 검토 등
○ 산탁업법	61. 12. 31	
○ 담보부사채신탁법	62. 1. 20	
○ 보험업법	77. 12. 31	
○ 수출보험법	68. 12. 31	
○ 각종 경제관계법 성법·진흥법· 총진법(자본시장법 성에 관한 법률·기계공업진흥법·기업공 개축진법 등)		산업간 혼령있는 발전우도에 미흡한 제도의 보완, 경제발전여건에 맞 지 않거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정 의 정비등 검토
<u>4. 국방·원호편</u>		
○ 방어해방법	63. 3. 23	
○ 군용전기통신법	61. 12. 30	
○ 군사원호관계법		
<u>5. 교육·문화편</u>		
○ 교육법	49. 12. 31	
○ 시립학교법	63. 6. 26	

○ 영화법	56. 3. 3
○ 저작권법	57. 1. 2
○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61. 8. 24
○ 사회단체등록 예관한법률	63. 12. 12
<u>6. 농·수산편</u>	
○ 농산물 가격유지법	61. 6. 2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예관 한법률	76. 12. 31
○ 종묘 관리법	73. 2. 26
○ 주요 농작물 종자법	75. 4. 4
○ 식물 방역법	61. 12. 30
○ 농산물 감사법	62. 12. 24
○ 농업 재해 대책법	67. 1. 16
○ 방조 제관리법	53. 12. 5
○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75. 4. 11
○ 농업 창고법	61. 12. 30
○ 수산업법	53. 9. 9
○ 어업자원보호법	56. 12. 14
○ 사방사업법	62. 1. 15
<u>7. 상공편</u>	
○ 부정경쟁방지법	61. 12. 30
○ 무역거래법	67. 1. 16
○ 수출 조합법	61. 9. 9

○ 수출 검사법	62.10. 4	
○ 방명보호법	58. 3.11	
○ 기량법	61. 5.10	
<u>○ 건설법</u>		
○ 각종 토지 관리법		○ 토지수용 근거규정을 둔 법률 중 토지수용 법상의 공공 사업과 중 복되어 통일화한 토지수용 근 거규정의 삭제 정비 및 토지수용 법상의 공공 사업 범위 외의 사업 을 위한 토지수용 근거규정의 토 지수용법 예의 흡수 통합 검토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토지수용 절 차상 요구되는 사업 인정을 의제 하는 등 특별 절차규정의 조사 정리 검토
		○ 보상액의 신정 기준인 기준지 가 격도의 통일방안 검토
		○ 토지 평가를 위한 자격제도의 이 원화 문제 검토
○ 건설업법	71. 1.19	
○ 건축법	62. 1.20	
○ 수도법	61. 12.31	
○ 도로 정비촉진법	67. 2.26	

○ 학천법	71. 1.19	
○ 공유수면관리법	61. 12. 13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지방항만의 관리자가 해운항만청장으로 되어 있고, 항만법에서는 지방항만의 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양 법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할부처와 협조하여 공유수면관리체계의 정비 예부 검토
○ 공유수면 매립법	62. 1.20	
<u>9. 보건·사회·노동편</u>		
○ 식품위생법	62. 1.20	
○ 공중위생관제법		여러개의 개별법으로 분산규정되어 있는 공중위생관제법의 통합 정비
• 공중목욕장업법		
• 숙박업법		
• 이용사 및 미용사법		
○ 환경보전법	77. 12. 31	
○ 의료법	73. 2. 16	
○ 약사법	63. 12. 13	
○ 재해구호법	62. 3. 20	
○ 산업안전보건법	81. 12. 31	사업장현실 여건에 맞지 아니한 규정의 유무 등 검토

10. 교통·체신법

- | | |
|--------------|------------|
| ◦ 철도법 | 61. 9. 18 |
| ◦ 자동차운수사업법 | 61. 12. 30 |
| ◦ 도로운송차량법 | 62. 1. 10 |
| ◦ 자동차손해비상보장법 | 63. 4. 4 |
| ◦ 항공법 | 61. 3. 7 |
| ◦ 선원법 | 62. 1. 10 |
| ◦ 운전물운송법 | 60. 2. 1 |

11. 기타

- 각종 영업등 인허가법규
 - 불이익 처분 시 사전의견청취 제도 도입 확대방안 검토
 - 유해무해 가영업의 균질방안 검토
 - 과정금 도입 확대방안 검토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규정한 각종 법률
 - 벌금의 과태료화 방안 검토
- 토석재취구제와 관련된 각종 법률
 - 토석재취구제와 보호에 관한 단일법 제정 검토

(관련)

- 산림 법
- 사방공 사법
- 농 지 의 보 전 및 이용 예관한
법률
- 농 지 확 대 개발촉 진 법
- 초 지 법
- 낙농 진흥 법
- 도 시 계획 법
- 자연공원법
- 택지 개발촉 진 법
- 공 우 수 면 관리 법
- 하천 법
- 특 정 지역 종 합 개발촉 진 예
관한 특 법 조 치 법
- 도로 법
- 산업 기지 개발촉 진 법 등